

법무부령

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
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법무부 (형사기획과)
연 월 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특별사법경찰관 송치서류의 유형 및 작성 방식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송치서류 중 사건송치서, 압수물 총목록, 기록 목록, 의견서를 제외한
나머지 서류의 면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(안 제1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13. ~ 1. 20.) 예정

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
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, 2부터 시작하여 2, 3, 4, 등으로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1조(송치서류) ① ~ ⑥ (생략)	제111조(송치서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,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서류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-1, 2-2, 2-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.	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, 2부터 시작하여 2, 3, 4 등으로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.
⑧ ~ ⑪ (생략)	⑧ ~ ⑪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545